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유 의 사 항

- ※ 본 수의계약은 아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 견적제출 참가자는 불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둔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8. 27.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8. 21. 20:00 ~ 2026. 8. 27. 10:00
예산액	금49,980,000원	기초금액	금49,980,000원(부가세, 손배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개찰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문의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사업문의	도로관리과 도로구조물팀(041-540-2932)
비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 ☐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책임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 본 영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pm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천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 ☐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